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5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김태년 · 김한규 · 추미애

이수진 • 박해철 • 박민규

허 영・김남근・주호영

안도걸 · 김성원 · 박선원

송재봉 · 문대림 · 이학영

정진욱 · 정성호 · 윤종군

홍기원 • 이기헌 • 조승래

이상식 · 이재강 · 최민희

임광현 · 송기헌 · 박균택

박지혜 · 위성곤 · 손명수

문금주 • 백승아 • 이훈기

황명선 · 황 희 · 전현희

정준호 · 임호선 · 김영진

김영배 • 전진숙 • 황정아

이연희 · 허성무 · 이성윤

윤상현 · 강준현 · 김민석

최형두 • 한정애 • 임종득

배현진 • 김정호 • 김병기

유동수 · 남인순 · 박정훈

의원(5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

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영구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또는 항공작 전기지의 설치를 고시할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한 차폐면(遮蔽面)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8의3. "비행안전영향평가"란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 물 설치 등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치 등이 비 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45미터"를 "90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제4구역, 제5구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하여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2인 이상"을 "2명 이상"으로, "9인 이상 11인이하"를 "9명이상 11명이하"로,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을 "합참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으로, "5인이상 9인이하"를 "5명이상 9명이하"로, "2인이하"를 "2명이하"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제6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⑤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2명을 포함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허가등의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명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져 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8의2.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에 위치한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또는 항공작전기지의
	설치를 고시할 당시 건설 중
	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
	한 차폐면(遮蔽面) 이하의 새
	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
	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신 설>	 8의3. "비행안전영향평가"란 항
	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서 건축물 설치 등의 허용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치 등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

9. ~ 15. (생략)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 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 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 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 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 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 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 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 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 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し	Ļ
- 1	٠.

9. ~ 15. (현행과 같음)
세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90미터</u>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 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 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 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 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 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 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 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허용 여부를
<u>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영향</u>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술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
역,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구역 제2구역, 제4구역, 제5구
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하
여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 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2</u> 명
<u>이상</u> <u>9명 이상 11명</u>
이하합
참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5명 이상 9
<u></u> 명 이하

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u>2명 이하</u>
⑤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2명을 포함하여 관할
부대장등이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다만, 허가등의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
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
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
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
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서 추천하는 2명 이하의 사람
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⑤</u> (생 략)